#### 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## 여 수 시 보

### 시정방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자

#### 【고 시】

○ 여수시 고시 제2017-7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 허가

/3

#### 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7-662호 여수시 문수중계펌프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/4
- 여수시 공고 제2017-668호 여수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 변경(안) 열람공고 /8
- 여수시 공고 제2017-673호 여수 죽림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축소 지정 알림 /9
- 여수시 공고 제2017-681호 어업면허 처분 공고 /10
- 여수시 공고 제2017-683호 2030년 여수 도시기본계획(일부변경) 열람공고 /11
- 여수시 공고 제2017-684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허가취소 /12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 송달 공고
- 여수시 공고 제2017-689호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/14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고시 제2017-75호

##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고시 합니다.

	허가번호	점용사용 장소	점용	사용 면적(m²)		점용사용	점용사용 기간	피허	가자	비
	(2017년)	16 6T	당 초	변 경	증감	목 적	기간	주 소	성 명	고
	2007–42 (2017–24)	여수시 돌산읍 우두리	3,900	3,900	0	여객선 접안	'15. 6. 1.	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17-22	- (주)한려수도 대표 김순병	
		813-10번지 지선 공유수면	직접 1,740	직접 1,776.9	증36.9		'20 F 21 여수시 - 남해안크	- 남해안크루즈		
		OHIL	간접 2,160	간접 2,123.1	감36.9	11 50	20. 0.01.	엑스포대로 320-66	관광(주) 대표 임규성	

2017. 3. 29.

여 수 시 장

## 여수시 문수중계펌프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여수시 문수동 문수중계펌프장 내 시설물 관리 및 민원인 보호,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2017년 03월 29일

# 여 수 시 장

#### 1. 설치목적

여수시 문수동 문수중계펌프장 내 시설물 관리 및 민원인 보호,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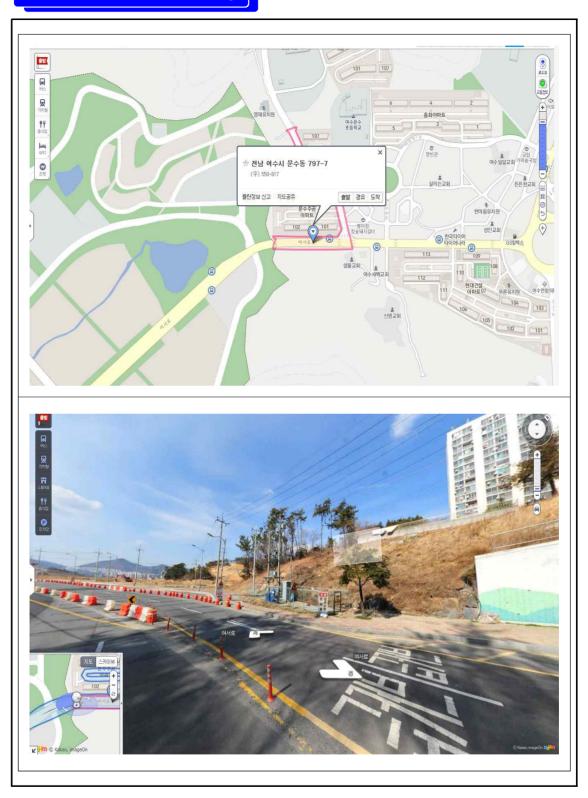
#### 2. 관련법령

- 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・운영 제한)
- 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- 3. 사 업 명: 여수시 문수중계펌프장 CCTV 설치
  - 위 치: 여수시 문수동 797-7
  - 시행청: 여수시 하수도과
- 4. 촬영범위 및 시간: 24시간 연중 (30일이내 영상자료 보관)

- 5. 공고방법: 여수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yeosu.go.kr)
- 6. 행정예고기간: 2017. 03. 29. ~ 2017. 04. 18.(20일간)
- 7. 설치장소: 문수중계펌프장 내(세부사항 '붙임 1, 2' 참조)
- 8. 의견제출
  - 가. 제출기한: 2017. 03. 29. ~ 2017. 04. 18.(20일간)
  - 나. 제출방법: 방문 또는 우편, 팩스, 메일
    - ※ 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하여야 함.
  - 다. 기재내용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주소 및 의견(찬·반 여부,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)
  - 라. 제출기관: 여수시 하수도과
    - 주 소: (59769)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(돌산청사)
    - 전 화: 061-659-4989
    - 팩 스: 061-659-5860
    - 메 일: <u>ih9057@korea.kr</u>(담당자 임현)
  - 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
    - 여수시 하수도과 담당자 임현(☎061-659-4989)
  - 바. 기타사항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- 붙임 1. 위치도 및 사진대장 각 1부.
  - 2. 의견 제출서(서식). 끝.

### 【붙임 1】

# 위치도 및 사진대장



### 【붙임 2】

	의 견	제 출	서	
사 업 명	여수시 문수중계품	험프장 CCTV 설	치에 따른 행정이	<del>비</del> 고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의신 제물자	주 소		전화번호	
설치예정위치		검토의견 (의견	제출 내용)	

여수시 문수중계펌프장 CCTV 설치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7년 월 일

의견 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여 수 시 장귀하

#### 여수시 공고 제2017 - 668호

#### 여수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 변경(안)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

여수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, 제28조,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3. 29.

여 수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 변경(안) 조서

#### 가. 유수지

■ 유수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	치	면 기 정	적 ( 변 경	m²) 변경후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1	유수지	유수시설	여수시 돌 <sup>4</sup> 1181번	산읍 우두리 지 일원	-	증)7,659	7,659	_	

#### 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유수지	・신설 - 면적 : 7,659㎡	·집중호우시 침수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수지 신설

- 2. 여수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 변경 도면: 게재 생략
- 3. 열람장소 : 여수시청 도시계획과
- 4. 공고기간 : 2017. 3. 29. ~ 2017. 4. 12.(14일간)
-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yeosu.go.kr/">http://www.yeosu.go.kr/</a>) 게재되어 있으며, 도시계획과(☎061-659-4 0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지정 공고

『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』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여수 죽림1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지정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8일

## 여 수 시 장

### □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지정 내역

○ 대상지역 :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233번지 일원

○ 해제사유 : 죽림현대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부지 제외

○ 지정면적 : 기정 1.127km (340,920평)

변경 1.003㎢ (303,400평) 감소 0.124㎢ (37,510평)

○ 지정기간 : 2015년 12월 24일 ~ 2020년 12월 23일(5년)

※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열람 : 여수시 민원지적과 (☎ 061-659-3352)

### □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	지 역	면 적
	주 거 지 역	180㎡ 초과
	상 업 지 역	200㎡ 초과
도시지역내	공 업 지 역	660㎡ 초과
	녹 지 지 역	10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	90㎡ 초과
	농 지	500㎡ 초과
도시지역외	임야	1,0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<sup>²</sup> 초과

#### 여수시 공고 제2017-681호

#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

「수산업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.

### ◆ 어업면허 처분 내역 ◆

면허	어업의	НІНІЛІО	면적	어장	면허기간	수산지원 조 성 금	어 업 권 자		비고	
번호	종류	양식방법	(ha)	위치	번에기간 	조 성 금 (천원)	주 소	성명	비고	
11726	해조류 양식	수하식	4.5		2017.06.24 2027.06.23	_	여수시 남면 심장리	심미 어촌계	10727 확대 재개발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17. 3. 29.

여 수 시 장

### 2030년 여수 도시기본계획(일부변경) 열람 공고

2030년 여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22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공고합니다.

2017. 3. 29.

#### 여 수 시 장

1. 승인일자 : 2017. 3. 29.

2. 승인권자 : 전라남도지사

3.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(일부변경) 내용

○ 시가화예정용지 신설 : 0.60km²

당초	증감	변경
7.86km²	증)0.60km	8.46km²

○ 보전용지 변경 : 감)0.60km²

당초	증감	변경
378.839km²	감)0.60㎢	378.239

4.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(일부변경) 도서 : 열람장소 비치

5. 열람장소 : 여수시청 도시계획과

6. 열람기간 : 2017. 3.29. ~ 2017. 4.28.(30일간)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(061-659-40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『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』업소에 대한 청문 공시 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제75조(허가취소 등)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예정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(청문)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. 폐문,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6. 3. 29.

## 여 수 시 장

- 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영업허가취소(청문통지)
- 2. 법적근거 : 식품위생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
- 3. 공고기간 : 2017. 3. 29 ~ 2017. 4. 14(18일간)
- 4. 영업허가취소 예정업소 현황

업종	허가번호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	위반사항	예정행정처분
유흥 주점	1995-0506340	뉴스타나이트	조☆희	여수시 선소로 25	사업자등록 폐업 (폐업일자 2016.12.31)	영업허가취소

#### 5. 청 문

- ○기 관 명 : 여수시청 식품위생과
- 청문주재자 : 시민소통담당관 법률지원팀장 박활수
- 청 문 일 시 : 2017. 4. 27(목) 14:30
- 장 소 : 여수시 무료 법률상담실

#### 6.유의사항

○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에 의견제출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)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-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(http://www.simpan.go.kr)으로 우리 시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광주지방 법원에 「행정소송」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7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여수시 식품위생과 ☎(061) 659-4228

#### 여 수 시 장

전철 2017. 3. 20. 신윤옥

협조자

시행 식품위생과-5240 접수

우 59674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4길 47, (학동) / www.yeosu.go.kr

전화번호 061-659-4229 팩스번호 061-659-5842 / hakim5838@korea.kr / 비공개(6)
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.

## 공 고

「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3. 29.

## 여 수 시 장

「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O 기존 여수시도시공사를 공공시설물 관리·운영과 대행사업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O 조례의 제정 목적(제1조)
-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수행사업(제2조)
- O 비상임이사 임명 및 공단 업무상황 자료 반기별 제출(제3조, 제4조)
- O 대행사업 비용정산 및 정산결과 불용액 반납(제5조)
- O 인사,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시장 사전 승인 및 검사(제6조)
- O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(부칙 제2조)
- O 공사 자본금, 고용관계, 그 밖의 권리·의무 포괄 승계(부칙 제3조)

- 3. 입법예고기간 : 2017. 3. 29. ~ 2017. 4. 18.(20일간)
- 4. 제정조례안 : 별첨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의견제출 사항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  -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  -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기획예산과장)
  - 전 화: 061-659-3408, 팩 스: 061-659-5813
  - 이 메 일 : shinesky7@korea.kr
- **의견제출 방법**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#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	조례명	:	여수시도시관리	공단	설립	및	운영에	관한	조례(	안
--	-----	---	---------	----	----	---	-----	----	-----	---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	찬성	여부		기타 참고사항	
조례안 항목별 내용		반대	의견(사유)		

##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립 및 사업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 시도시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 - 1. 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
    - 가.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업
    - 나.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사업
    - 다. 종량제 봉투 및 배출 스티커 판매 사업
    - 라.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사업
    - 마.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
 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제2조제2항제3호의 사업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한다.
- 제3조(이사)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·회 계·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서류제출)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 연도마다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정산)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「지방공기업법」제71조 제1항에 따라 시가 해당 사업연도에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, 정산결과 미지급금, 예산이월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감독) ① 공단은 임직원의 인사, 복리후생,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공단에 명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「지방공기업법」제80조제6항에 따라 공단이 승계한 자본금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여수시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, 공단은 여수시도 시공사의 임직원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